KRi Paradigm : Leader

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용역협력업체 업무협약서

㈜**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**(이하 "갑" 이라 한다)와 **리컴하우스** (이하 "을" 이라 한다)는 "갑" 이 지정한 용역업무와 관련한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본 협약은 "갑" 과 "을" 의 **2020 년 SPC Mystery Shopping 조사** 개별 용역계약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간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존중 및 신뢰)
"갑" 과 "을" 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협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 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업무협약 기간)
1) 본 협약의 기간은 2020 년 1 월 13(월)일부터 2020 년 5 월 12 일(화) 총 4 개월로 계약하며,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한다.
2) 업무 형태는 매주 2 회 기준, 총 32 회 출근, 오전 10 시~오후 5 시 (변경 필요 시 사전 조정 후 공유)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4 조 (업무협약 대상 및 개별계약)
1) 본 협약대상이 되는 개별 용역계약은, "갑" 의 개별 용역의뢰 내역, "을"의 견적제출 및 "갑" 과 "을" 의 개별 용역비용, 일정합의 등 제반 개별 계약에 관한 일체의 상호 간 전달문서로 갈음한다.
2) 업무협약 대상은 전반적인 실무에 대한 사전 가이드, 수행 업무에 대한 리뷰 및 피드백 등이며,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, 쇼퍼 간담회 진행, 쇼퍼 오티 1 회 진행 및 이후 진행에 대한 피드백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.
3) 출근하지 않는 경우, "출근 하지 않는 경우에 협의 또는 의사 결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계약된 업무에 대해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내용에 대해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.

제 5 조 (용역 대금의 지급)
1) 용역 대금은 1 달 기준 400 만원(총 1,600 만원, 부가세 별도)로 한다
2) 대금 지급은 KRi 내규에 따라 계약일 기준으로 익월 계약 전일까지를 1 달로 하며, 익월 계약일에 세금 계산서 발행 시,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월 말일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6 조 (협약의 해지)
1) "갑" 은 다음 각 항의 경우 본 협약을 해제•해지할 수 있다.
① "을" 의 본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
② "갑" 이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"을"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.
③ "을" 이 개별용역업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2 일이 경과하기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.
④ "을" 이 "갑" 의 사전 승인 없이 개별용역계약에 대한 권리,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.
⑤ 부득이한 사유로 쌍방이 본 협약을 상호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.

2) "을"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해지 시점에 이행 중인 개별용역계약으로 기 수령한 금액을 "갑"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1 항 5 호의 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이행 중인 개별용역업무의 정산서 및 작업물을 제출하여 "갑" 의 검사를 받아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.

제 7 조(변상의 책임)
"을" 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, "을" 은 이로 인하여 "갑" 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개인정보보호)
본 협약 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'개인정보보호 이행 서약서' 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 해지와 피해보상의 사유가 될 수 있다.

제 9 조(정보보안 및 유출금지의무)
1) "을" 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"갑" 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유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"을" 의 직원 또는 대리인도 본 의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.
2) "을" 은 "갑" 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본 협약관계가 어떠한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"갑" 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"갑" 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지적재산권)
본 협약에 의하여 제작된 제작물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"갑" 에게 귀속한다.

제 11 조 (관할법원)
본 협약이 포괄하는 개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, 의견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며,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, 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
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협약당사자가 각각 1 부씩 보관한다.

2020. 1. 8.

(갑)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 길 12, 3 층
(역삼동, 허바허바빌딩)
㈜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
대표이사 박 태 영 (인)
조 우 철 (인)

(을)
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38, 4 층 5 호
(방이동)
리컴하우스
대표이사 우 진 애 (인)